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3-13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2개 분야, 총 11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행정	7명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인턴02	행정	1명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경기도 과천시)
인턴03	행정	1명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충북 청주시)
인턴04	행정	1명 (장애)	
인턴05	홍보	1명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2023. 5. 예정)로부터 6개월
- (보 수) 시급 9,620원, 월 기준 2,010,580원 (세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주5일,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업무
인턴01	행정 (1명)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위원회 회의 준비, 간담회 등 행정업무 지원
	행정 (1명)	○ 운영지원과 - 기록물 검수 및 정리 등 행정업무 지원
	행정 (1명)	○ 법무담당관실 - 소송·행정심판 현황 통계 분석 등 행정업무 지원
	행정 (1명)	○ 민원조사기획과 - 고충민원 데이터 분석 등 행정업무 지원
	행정 (1명)	○ 국민신문고과 - 국민모니터단 운영 지원 등 행정업무 지원
	행정 (1명)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 점검자료 데이터 분석 등 행정업무 지원
	행정 (1명)	○ 적극행정국민신청팀 - 사후관리 데이터 정비 등 행정업무 지원
인턴02	행정 (1명)	○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 통합콜센터 구축 사업을 위한 상담자료 수집 업무 지원
인턴03	행정 (1명)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교육 운영 · 콘텐츠 개발 지원
인턴04	행정(장애 1명)	
인턴05	홍보 (1명)	○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홍보담당관실 - 정책기자단 운영, 사진 촬영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3. 5. 17.)기준

-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관련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인턴04 해당 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3. 4. 18.) 기준

- 채용 분야별 관련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지원코드	채용 분야	우대요건
인턴01 ~ 인턴02	행정(8명)	○ 국내·외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 국내·외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학과 : 행정, 법, 세무, 회계, 전산, 등 이와 유사한 학과
인턴03	행정 (1명)	○ 국내·외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 국내·외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학과 : 교육,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공학,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 이와 유사한 학과
인턴04	행정 (장애 1명)	
인턴05	홍보 (1명)	○ 국내·외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 국내·외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학과 : 신문방송, 광고홍보, 언론정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사진 등 이와 유사한 학과

다. 가산점 부여 *원서접수 마감일(23. 4. 18.)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인턴01 분야에만 해당(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
 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
 여야 함(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1호: 10점, 2호 :5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1,2,4호 : 10점, 3,5호 :5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1,2,4호 : 10점, 3,5호 :5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1,2,4호 : 10점, 3,5호:5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1항(1호: 10점, 2,3호 :5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1,2호 :10점, 3호:5점)

-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가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가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확인서, 복지카드 등 제출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단,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공고문 2-다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4. (목)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 평정요소(5개) ①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상”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3. 4. 7.(금) ~ 4. 18.(화)
- 원서접수 : 2023. 4. 7.(금) ~ 4. 18.(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5. 4.(목)
- 면접시험일 : 2023. 5. 16.(화) ~ 5. 18.(목)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5. 22.(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4. 7.(금) ~ 2023. 4. 18.(화) 18:00
-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koya@korea.kr
 -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분야)[예 : 홍길동(행정)]으로 기재

나.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별지서식3】
- 우대요건, 가산요건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가산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서류제출 주의사항

- 가. 제출서류 중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전자우편으로 원서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 우대요건 관련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로(☎ 044-200-718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 · 홍보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우대·가산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3. 4. 18.)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해당란에 √ 표기

<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개인정보 확인기관</u>	<u>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u>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u>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성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